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및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확대〉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25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19.
3. 회부연월일 : 2025. 9.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투표 실시 및 통보 범위, 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주변지역 범위,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범위 등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그 범위를 일률적으로 '5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음.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지역의 범위를 5킬로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은 발전소와 달리 방사선 안전성·환경적 영향·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범위가 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등 특수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경우 긴급보호조치를 위해 관계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과 같이 제한된 범위 설정은 지원대상 범위를 협소하게

하여 지역 수용성과 갈등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주변지역’을 현행 법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10킬로미터로 확대함으로써 주민지원 범위를 현실화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성과 수용성을 높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2조제9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¹⁾에 위임된 주변지역의 범위를 반지름 10킬로미터로 확대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정의하여 주민지원과 의견수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843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u><신설></u>	법률 제20843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9. “주변지역”이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및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따라 영향 또는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

1)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관리시설 부지 선정) ① 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란 각각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출된 관리시설 예정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제13조(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관리시설 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2. 관리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제1호 외의 시·군·구 지역

현행	개정안
제17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 ① ~ ⑤ (생략)	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 예정부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리시설 부지 나. 제36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⑥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초안을 공람하게 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시설이 건설 또는 운영되고 있거나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	⑥ ----- ----- ----- ----. ----- ----- ----- ----- ----- ----- ----- ----- ----- ----- ----- -----

현행	개정안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u>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 ----- <u>주변지역</u> ----- ----- -----.
⑦ · ⑧ (생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관리시설 부지 선정) ① (생략)	제23조(관리시설 부지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출된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를</u> 관할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 ----- ----- <u>주변지역을</u> ----- ----- ----- -----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시설 예정부지가 도출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를</u>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가 선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 ----- ----- ----- ----- <u>주변지역을</u> ----- ----- -----, ----- ----- -----.

현행	개정안
제24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 설치) ①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그 <u>주변지역</u>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 및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또는 심층조사를 실시한 지역(이하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 설치) ① ----- ----- ----- <u>주변지역</u> ----- ----- ----- ----- ----- -----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① ~ ③ (생략)	제31조(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u> 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 ----- ----- ----- ----- ----- <u>주변지역을</u>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 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제36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 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현행	개정안
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수립하려는 자는 부지내저장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이하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이라 한다) 주민의 의견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⑤ ~ ⑨ (생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주변지역</u>-----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고준위법 주변지역 정의 및 위입규정 개정안 대비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주변지역 정의	<신 설>	제2조제9호 신설: 관리시설 예정부지 및 부지 내 저장시설*로부터 반지름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위임 규정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대통령령 위임 문구 삭제 및 "주변지역"으로 일괄 치환
해당 조문	제17조, 제23조, 제24조, 제31조, 제36조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행정적 임의성 배제

*주)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처분 시설로 인도하기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서 한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현재 원전 내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습식저장시설²⁾에 보관 중이나, 2030년부터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 포화가 예상됨.

[주요 원전별 습식저장시설 포화 예상 시점]

원전본부 (소재지)	현재 포화율 (%)	예상 포화 시점
한빛 (영광)	83.0%	2030년
한울 (울진)	78.8%	2031년
고리 (기장)	91.2%	2032년
월성 (경주)	90.2%	2037년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제출자료(2026.02.13.) 재구성

이에 따라 수조 밖에서 공기 대류로 냉각하는 건식저장시설³⁾을 원전 부지 내에 건설해야 하는데⁴⁾⁵⁾⁶⁾,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권인 ‘주변지역’의 범위를 두고 지자체 및 주민 간 수용성 확보가 핵심 현안으로 부상함.

- 2) 습식저장시설(Wet Storage):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내의 냉각수가 채워진 수조에 담가 방사선을 차단하고 냉각시키는 시설
- 3) 건식저장시설(Dry Storage): 습식저장시설에서 일정 기간 냉각된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이나 콘크리트 용기에 담아 외부 공기로 냉각·저장하는 시설
- 4) 원자로 건물 내부에 위치한 습식저장조는 설계 당시부터 그 용량이 고정되어 건설되는데, 수천 톤의 냉각수와 차폐 벽이 필요한 시설의 특성상 이미 완공된 원자로 건물을 뚫거나 수조를 더 넓게 확장하는 것은 원전 전체의 구조적 안전성을 해칠 수 있어 공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 5)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인출된 직후 매우 높은 붕괴열을 방출하는데, 초기 5~10년 동안(1단계, 습식)은 물속에서 열을 식히고 방사선을 차폐하고, 10년 정도 지나 열이 어느 정도 식으면 물 없이 자연 대류(공기)만으로도 냉각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이때가 되면 굳이 물속에 둘 필요 없이 안전한 건식 캐스크로 옮겨 보관(2단계, 건식)할 수 있게 됨.

[습식저장·건식저장 비교]

구분	습식저장 (Wet Storage)	건식저장 (Dry Storage)
냉각 방식	냉각수(물)에 의한 강제 순환	자연 대류(공기)에 의한 수동 냉각
주요 장치	펌프, 열교환기, 지속적 전원 필요	특수 용기(Cask), 별도 동력 불필요
설치 위치	원자로 건물 내 수조	원전 부지 내 별도 지상 시설
유지 관리	상대적으로 복잡 (수질·수위 관리)	단순 (표면 온도·방사선량 감시)
안전성	전원 상실 시 온도 상승 위험	자연재해(지진, 쓰나미)에 상대적 강함

- 6) 원자력 발전소는 주기적으로 새 연료를 넣고 탄 연료를 꺼내야 하지만, 습식저장조가 꽉 차면 꺼낸 연료를 둘 곳이 없어 원자로 내부의 연료를 교체할 수 없게 됨. 이는 곧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상대적으로 열이 식은 오래된 연료를 건식시설로 옮겨 습식저장조 내에 새로운 연료를 담을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줘야 함.

한편, 현행 5km 기준은 주민의 직접적인 불안감과 심리적 영향권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과 같이 주변지역을 10km로 확대할 경우 지원 대상과 주민 참여 범위를 현실화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특히 「방사능방재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⁷⁾이 최대 30km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 범위를 10km까지 넓히는 것은 수용성 확보를 위한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수용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확대에 따른 수혜 금액의 분산 가능성 및 타 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 여부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주변지역 확대에 따른 수혜 규모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에 따라 주변지역 범위를 5km에서 10km로 확대할 경우, 지원 대상 인구는 기존 10.7만 명에서 27.7만 명으로 약 158% 증가(2.58배)하게 됨.⁸⁾

7)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주민 보호를 위해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는 구역으로, 긴급보호조치구역은 20~30km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하 “기초지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
2.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

8) 인구 증가율($276,793 \div 107,194 \approx 2.58$)에 따라, 동일한 1인당 지원 단가를 유지하려면 기존 예산의 158%에 해당하는 추가 재정이 필요함.

[주변지역 범위별 지자체 및 인구 현황 비교]

구 분	현행 (5km)	확대 (10km)	증가분 (증가율)
대상 기초 지자체	6개	8개	+2개 (울산 북구, 삼척 등)
대상 읍·면·동	13개	21개	+8개
대상 인구수	107,194명	276,793명	+169,599명 (약 158%↑)

[범위 확대 시 1인당 지원 혜택 시뮬레이션]

원전본부	현행 인구(5km)	확대 인구(10km)	현행 대비 1인당 혜택 (%)
고리	47,002명	171,624명	27.4%
한빛	18,301명	23,011명	79.5%
월성	15,365명	52,559명	29.2%
한울	26,526명	29,599명	89.6%
전체 평균	107,194명	276,793명	38.7% (61.3% 감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변지역 범위 확대에 따른 인구 현황 비교자료(2026.02.24.)

예컨대 한정된 재원(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⁹⁾) 내에서 대상만 확대할 경우 고리·월성 등 인구 밀집 지역의 개별 주민 혜택은 70% 이상 낮아지게 됨.

위와 같이 인구가 대폭 유입되는 지역의 경우, 최인접 지역(5km 이내)의 지원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기존 수혜 지역과 신규 지역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수 있음.

둘째, 시설 안전성 수준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및 유치지역 지원을 위해 원전 사업자가 부담하는 법정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건식저장시설이 원자로 대비 위험 수준이 낮고, 실제 사고 시나리오 피폭선량 평가 결과 5.6km 지점의 개인선량은 $7.54 \times 10^{-7} \text{mSv}^{10)}$ 로 원안위 제한치(250mSv)¹¹⁾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이므로, 주변지역 범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임.

이에 위험도가 높은 원전 본체가 5km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저장시설의 범위를 10km로 넓히는 것은 '위험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또한 「발전소주변지역법」¹²⁾ 및 「방폐물유치지역법」¹³⁾이 주변지역을 5km로 규정하고 있어, 고준위 시설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할 경우 타 지역의 동등한 확대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셋째, 하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이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라는 위임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8조제1항¹⁴⁾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요

10) mSv(밀리시버트):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의 영향을 나타내는 단위. 연간 자연 방사선량이 약 2~3 mSv, 흉부 CT 1회 촬영 시 약 10mSv임.

11) 원자력시설의 위치 등에 관한 기술기준(원안위 고시 제2017-15호): 사고 발생 시 제한구역 경계에서 2시간 동안 전신 선량이 250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1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13)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유치지역 특별지원금의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서 다른 시·군·자치구의 읍·면·동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4) 시행령 제8조(공청회 개최): 법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주민 30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⑥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초안을 공람하게 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 등 구체적인 절차적 요건을 새로운 법적 근거에 맞춰 재정립해야 함.

이러한 하위 법령 정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실무 운영상의 기준이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입법 시 시행령 개정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설 안전성, 지역 갈등, 사업 지연 우려, 타 유사 법률 형평성 등 고려 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국수력원자력은 최인접 주변지역(5km) 주민 의견과 지역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사 사례와의 정합성을 위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자력환경공단은 사고 시 영향이 크지 않아 주변지역을 원전보다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현행법 유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행유지 또는 개정안보다 확대할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음.

야 한다. 이 경우 관리시설이 건설 또는 운영되고 있거나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개최) ① 법 제17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관리시설”이라 한다)이 건설 또는 운영되고 있거나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주민 중 30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계기관 및 지자체별 의견]

기관/지자체	공식 의견 상세
기후에너지 환경부	<수용 곤란> 시설 안전성, 지역 갈등, 사업 지연 우려, 타 유사 법률 형평성 등 고려 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함.
한국수력원 자력	<현행 유지> 최인접 주변지역(5km) 주민 의견과 지역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사 사례와의 정합성을 위해 현행 유지 필요.
원자력환경 공단	<현행 유지> 사고 시 영향이 크지 않아 주변지역을 원전보다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현행법 유지가 타당함.
부산광역시	<현행 유지> 시설 안정성 및 지역 갈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을 유지하자는 의견에 동의함. (원전 및 습식저장시설 대비 안전함 강조)
전남 영광군	<현행 유지> 시·군·구 및 읍·면·동 간 배분이 크게 달라지는 민감한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전북 부안군	<개정안보다 확대>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 이내)과 동일하게 주변지역이 설정되어야 함.

한편, 해외국들의 주변지역의 범위 설정 및 지원 방식은 국가별 원전 산업 구조와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예컨대 프랑스는 법적 구역(250km²)을 명시하여 지원하는 반면, 일본과 스웨덴은 행정구역 단위의 유연한 협의를 우선함.

특히 해외국들은 단순한 일회성 현금 보상에 그치지 않고, 관리 사업자의 본사 이전이나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지역의 장기적인 경제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지원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음.

[해외 주요국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사례]

국가	재원 성격 (출처)	지원 방식 (핵심 내용)	주변지역 설정 및 특징
프랑스	지원세·기술확산세 (원자력시설세 부가)	공익공동사업체(GIP) ¹⁵⁾ 를 통한 지역 진흥사업 지원	주변 250km ² 구역내 약 300개 지자체에 GIP 설치 및 지원

국가	재원 성격 (출처)	지원 방식 (핵심 내용)	주변지역 설정 및 특징
일 본	전원개발촉진세 (전기요금에 포함)	전원삼법 교부금 시스템에 의한 단계적 현금 지원	인접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원금의 일부(약 25% 내외) 배분
스웨 덴	발전사업자 직접 출연	부가가치사업(인프라 투 자, 본사 이전, 기술혁신 지원)	법적 정의 없이 후보지 2곳(유치지 vs 탈락지) 간 협의 배분
미 국	방사성폐기물기금(NWF) (사업자 부담)	사용목적 제한 없는 보 조금(네바다 주 및 주변 지역)	장관 재량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을 지정 하여 지원

출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해외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설정 및 지원사례 보고서(2024.12.)

문 의 처

02)6788-5537

15) GIP(공익공동사업체): 정부, 지자체, 사업자가 공동 설립하여 지역 사업을 지원하는 프랑스식 공공 법인